

정 관

제정	1996.	2.	26
개정	1998.	4.	6
	1998.	6.	5
	1999.	3.	31
	2001.	4.	18
	2003.	12.	4
	2004.	6.	24
	2004.	12.	7
	2006.	4.	26
전부개정	2006.	12.	26
	개정	2007.	3.
2008.		3.	26
	2009.	3.	31
	2010.	3.	30
	2013.	4.	5
	2014.	8.	1
	2014.	12.	29
	2017.	5.	24
	2017.	9.	8
	2017.	12.	29
	2018.	9.	28
	2019.	1.	4
	2020.	10.	21
	2021.	5.	31
	2024.	1.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31., 2014.12.29., 2018.9.28., 2021.5.31.>

제2조(명칭)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영문으로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약칭 “KRRRI”)로 표기한다.<개정 2017.5.24., 2018.9.28.>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 의왕시에 두며, 제6조에 따른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3.30., 2017.5.24., 2018.9.28.>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3.31., 2014.12.29., 2018.9.28.>

1.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경량전철시스템 연구개발

2. 차세대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
3. 철도안전, 표준화, 철도정책 및 물류기술 연구개발
4.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기술 연구개발
5.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시스템 핵심원천기술 연구 개발
6.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7. 중소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8.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9.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인증 등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①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5.31.>

② 대학원대학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24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은 대학원대학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교직원 임면 등 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학원대학의 장과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8.9.28.>

제6조(관할 연구회) 연구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지도·관리를 받는다. <개정 2008.3.26., 2014.8.1., 2018.9.28.>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두되, 상임(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자격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5.31.>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4., 2018.9.28., 2024.1.31.>

④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8., 2021.5.31.>

⑤원장은 원장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금전적 대가는 받을 수 없다. <신설 2017.5.24., 개정 2024.1.31.>

⑥원장은 연구원에 관한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8.9.28.>

⑦원장은 연구회 정관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사를 성실히 하여 그 결과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장 직속부서로 감사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1.5.31.>

⑧원장은 이사장이 정한 자체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개정 2024.1.31.>

제11조(감사) <삭제 2021.5.31.>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5.24., 2018.9.28., 2024.1.31.>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4.1.31.>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4.1.31.>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연구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5.24., 2018.9.28., 2024.1.31.>

1. 신체·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의 보수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1.5.31.>

②<삭제 2021.5.31.>

제15조(임원의 겸직) 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9.28., 2021.5.31.>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신설 2018.9.28.>

① 연구원의 임·직원은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를 좇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제) 원장은 연구원의 직제에 대하여 규정으로 정하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5.24., 2017.9.8., 2018.9.28.>

제18조(직원) ①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징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1.>

제19조(인력교류) 원장은 법 제32조 등 인력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개정 2018.9.28.>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기본재산)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18.9.28.>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21조(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임차, 무상양수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개정 2018.9.28.>

제22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자체수입금, 차입금,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5.24., 2018.9.28.>

제23조(회계원칙) 연구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7.5.24.>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제출) ①연구원은 매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업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4., 2018.9.28., 2024.1.31.>

②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사업의 목표, 성과,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4., 2018.9.28., 2024.1.31.>

제27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5.21., 2017.9.8.>

제28조(회계감사 등) ①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원장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감사위원회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삭제 2021.5.31.>

제29조(결산서 제출) 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매 사업 연도 결산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4., 2018.9.28., 2024.1.31.>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4., 2017.12.29., 2021.5.31.>

1.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개정 2021.5.31.>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개정 2018.9.28.>

제30조(회계감사)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4장 부설기관 등

제32조(부설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본원 외 조직 등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31.][전문개정 2024.1.31.]

제33조(위원회) 연구원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

제5장 보칙

제34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연구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규정한다.<개정 2017.5.24.>

제35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개정 2017.5.24., 2024.1.31.>

제3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9.28.>

제37조(해산)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7.5.24., 2024.1.31.>

1.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원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5., 2017.9.8.>

③연구원이 해산되거나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4.1.31.>

제38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제39조(기부금의 공개) 연구원은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1.>

부 칙

이 정관은 연구회 승인을 받은 날(2001.4.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3.1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4.6.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4.1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6.4.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6.1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주)한국철도산업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수한 재산은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7.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8.3.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연구원 원규 중 ‘공공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3.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4.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연구원 원규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동법률이 시행된 날(' 14.6.29.)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통보한 날(2017.5.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9.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방첩업무 시행지침, 창업지원규정, 정보보안규정, 감사규정, 감사업무요령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정관 시행당시 기타 연구원 다른 규정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인용하는 경우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09.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9.0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20.10.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21.3.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연구원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그의 남은 임기 동안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감사(監事)는 그 임기 종료 시 진행 중인 감사(監査)에 관하여 그 진행 내용을 기재한 이관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감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24.1.3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